

대한국제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03년	4월 26일	제정
2004년	5월 29일	개정
2007년	8월 11일	개정
2009년	2월 13일	개정
2009년	9월 25일	개정
2010년	1월 30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이하 '학회')의 연구보고서,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을 발간, 편집하고 이들 간행물에 게재될 연구 논문을 심사, 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학회가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의 발간사업을 위한 기본방침과 편집방향
 2.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활동을 위한 주제의 선택, 참여자의 범위 및 발표형식의 선택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가 발행하는 각종 연구간행물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2. 위 논문의 심사를 위한 전문심사위원을 심사위원단 중에서 지정하고 위촉하는 일.
 3. 위 전문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최종사정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
다만, 주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단의 위원이 아닌 자를 전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9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들로 구성된다.
- ② 위원은 국제법에 정통하고 연구업적이 뛰어나며 덕망이 높다고 인정된 학회의 회원들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단 당해 연도 출판이사는 편집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편집회의에 출석한다
- ③ 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이를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 (학회지의 발간)

- ① 국제법학회논총은 연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념호, 특별호 등을 발간할 수 있다.
- ② 국제법학회논총의 발간일자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 ③ 국제법학회논총은 학회 홈페이지 또는 여타의 전자적 매체를 통한 전자출판의 형태로 발간될 수 있다.
- ④ 논총 투고자는 논총의 출판과 그 활용에 관한 대한국제법학회의 권리를 승인한다.

제5조 (운영)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회장이 정한다.
- ② 위원회는 매년 4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학회에 기고된 논문의 수시심사 및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에게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제2조 제2항에 관련된 직무에 관한 보고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의 임기)

-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며, 충원 후에도 이미 착수한 업무를 완결한다.
- ③ 회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위원을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위원을 교체하기 위하여, 또는 자의로 사임한 위원을 승계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새로 임명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활동비와 수당)

회장은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직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불할 수 있다.

제8조 (명예와 비밀의 보장)

① 9명의 각 위원은 학회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명예를 보장받으며, 위원별로 수행된 활동에 대해서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업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② 각 위원은 편집회의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2004. 5. 29)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29)

제1조 본 규정은 200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11)

제1조 본 규정은 2007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13)

제1조 본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25)

제1조 본 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30)

제1조 본 규정은 201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